

#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12.14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2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2.21 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특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### 가. 제안이유

-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과 분배소 축소에 따른 시군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총정원 517명 ▶ 518명(1명 증원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서

- 0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민방위 경보시설의 경보운영

체계를 갖추고자 민방위 경보요원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임.

○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**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